

의안번호	2213544
의 퇴 인	김병주의원
회 답 일	2025.11.27.
추계번호	25D54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반환공여구역 임대 시 사용요율 하향 조정(안 제14조제6항)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한 금액으로 하되, 사용 용도에 따라 특례를 두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요율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를 용도 구분 없이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사용요율이 조정되는 경우 국유재산 임대료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사용요율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어 향후 임대계약 시 결정될 정확한 요율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현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여부, 추가 반환 예정인 공여구역의 임대 여부 등에 따라 임대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가 곤란함

[표 1] 반환 예정 기지 현황

소재지	기지명	
서울 용산	용산기지	(MP/SP)
		(수송부)
경기도 동두천	캠프 모스(일부)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캐슬(북)	
	캠프 모빌	
경기도 의정부	캠프 스탠리	
경기도 평택	CPX 훈련장	
	캠프 험프리스 소총사격장	
	오산 알파탄약고	
전북 군산	군산비행장(일부)	

주: 국방부에 따르면 반환면적 및 반환예정 시기 등은 한·미간 합의 중인 사항으로 공개 곤란
자료: 국방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요율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경작용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 1의2. 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업: 1천분의 10 이상
 - 1의3.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 6의2.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 가.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다. 자활기업
 - 라. 마을기업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